



리히텐슈타인 블록체인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김형섭 ✉ 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 juristkim@hanbat.ac.kr

I. 리히텐슈타인의 블록체인에 대한 대응

- 1) 리히텐슈타인(정식이름은 리히텐슈타인공국)은 유럽 중부의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의 접경에 위치한 남북 25km, 동서 6km에 면적은 160km²로 서울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인구는 3만 7,877명(2017년 6월 30일 현재)에 이르는 작은 나라이다. Amt für Statistik Liechtenstein, Bevölkerungsstatistik, 2017. 6. 30. 6면.
- 2) 2016년 총 부가가치의 약 23%가 금융분야에서 발생하고, 일자리의 약 17%가 금융서비스 부문에 기인한다. Regierung des Fürstentums Liechtenstein, Wirtschafts- und Finanzdaten zu Liechtenstein, 2019. 5. 30. 9면, 26면

II. 리히텐슈타인 블록체인법의 목적 및 기본 구조

블록체인은 분산원장과 P2P네트워크, 특유의 암호화기법에 기반하여 신뢰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시대의 새로운 혁신기술로서 정보독점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열렬히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기술은 종래 주로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관심을 받아왔으나 신뢰기반의 신용거래뿐만 아니라 스마트계약, 공공분야의 활용가능성을 고려할 때 향후 사회 및 경제 전반에 크나큰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유럽은 블록체인의 기술적 발전과 관련 산업의 확장을 주도하고 있고 정책 및 제도화의 중심에 서 있어 정책 및 법제도의 다양한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 중부의 작은 나라에 불과한 리히텐슈타인^①은 유명한 조세피난처로서 유럽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금융자본이 많이 몰려 있고 금융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② 그러므로 금융산업의 발전과 변화에 리히텐슈타인 정부와 금융업계는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새로운 기술에 기초한 금융서비스의 도입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며, 관련 금융서비스산업의 육성에도 가장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리히텐슈타인은 국제사회에서 자금융명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금융서비스의 분산화된 거래방식을 통하여 해킹과 같은 공격으로부터 금융데이터의 위변조에도 대응할 수 있고, 금융관리의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블록체인 내지 분산원장기술에 국가적인 관심을 쏟기 시작하였다.

2016년 이후 리히텐슈타인의 총리재무부(Ministerium für Präsidiales und Finanzen)가 블록체인이란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한 결과, 블록체인은 신뢰기반의 거래시스템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금융부문을 포함하여 경제에 대한 크나큰 잠재력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참여자들의 법적 확실성 및 안정성을 크게 개선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마침내 최초로 블록체인에 대한 포괄적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③

1. 법률의 제정 배경 및 목적

리히텐슈타인은 블록체인에 대한 일반적 규율의 필요에 따라 2018년 8월에 블록체인법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규제 방향과 틀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기 시작하였다.^④ 마침내 ‘토큰 및 신뢰기술기반 거래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률안’(이하 ‘토큰 및 신뢰기술기반 서비스법’, TVTG)^⑤이 그 논의의 결과물로 제출되었고, 내각의 의결을 거쳐 10월 3일 의회를 통과한 후 마침내 2020년 1월 1일 그 시행이 이루어졌다. 당해 법률안은 토큰경제(암호화폐 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와 그 기술의 활용을 위한 적극적 육성을 담고 있어 신뢰기술에 관한 최초의 종합적 법률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법률은 리히텐슈타인 블록체인 기술 사용자에게 더 큰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토큰경제의 긍정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한다.^⑥ 블록체인법은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에 있어 개인 간의 코인이나 토큰의 교환과 같은 단순한 거래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가치나 권리가 보편적으로 블록체인 시스템에 표창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경제적 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선택가능성을 지향하고 있다.^⑦ 이러한 관점에서 이 법률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응용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신뢰기술’에 기반한 ‘토큰경제’라는 포괄적인 용어로 특징지어 사용한다.^⑧

리히텐슈타인은 이 법률을 통해 잠재력이 큰 블록체인 기술과 이를 통한 토큰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토큰에 대한 법적 안정성 및 확실성을 높이고 고객보호를 개선하며, 토큰경제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정책적으로 목표로 함으로써 9 적절한 규제환경의 조성과 규제명확성을 도모하고 있다.

2. 법률의 구조 및 내용

토큰 및 신뢰기술기반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률(TVTG)의 구성 10

제1편 일반규정	제1조 대상과 목적 제2조 개념정의와 명칭
제2편 민법상 근거	제3조 대상과 효력범위 제4조 토큰의 자격 제5조 처분권과 처분권한의 부여 제6조 토큰의 처분 제7조 처분의 효력 제8조 권리추정효(Legitimations-) 및 해방효(Befreiungswirkung) 제9조 선의에 의한 취득 제10조 토큰의 실효신고
제3편 신뢰기술기반 서비스제공자의 감독	총칙 신뢰기술기반 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제11조 대상과 효력범위 제12조~제17조 제1절 등록의무 및 등록요건 (제12조~제17조) 제2절 등록절차 (제18조, 제19조) 제3절 효력상실과 박탈 (제20조~제22조) 제4절 신뢰기술기반 서비스제공자의 등록부 (제23조) 제5절 영업활동의 수행 (제24조~제29조) 제6절 토큰발행의 기본정보 (제30조~제38조)
	감독 제39조 관할 제40조 공무상 기밀 제41조 국내 관청 및 기관과의 협력 제4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전송 제43조 금융시장감독청(FMA)의 임무 및 권한 제44조 감독공과금 및 수수료
	절차 및 법적 수단 제45조 절차 제46조 법적 수단
	처벌규정 제47조 경죄와 위경죄 제48조 책임 제49조 제재의 통지와 유책선고의 구속효
제4편 경과 및 종결 규정	제50조 경과 규정 제51조 시행

토큰 및 신뢰기술기반 서비스법(TVTG)은 4편 5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은 일반규정으로 이 법의 대상 및 목적(제1조), 개념정의 및 명칭(제2조)을 정하고 있고, 제2편은 민법상 근거로서 대상과 효력범위(제3조), 토큰의 자격(제4조), 처분권과 처분권한의 부여(제5조), 토큰의 처분(제6조), 처분의 효력(제7조), 권리추정효와 해방효(제8조), 선의에 의한 취득(제9조), 토큰의 실효신고(제10조)를 규정하며, 제3편은 신뢰기술기반 서비스제공자의 감독으로 총칙의 장에서 대상과 효력범위(제11조)를, 신뢰기술기반 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의 장에서는 제1절 등록의무 및 등록요건(제12조~제17조), 제2절 등록절차(제18조, 제19조), 제3절 효력상실과 박탈(제20조~제22조), 제4절 신뢰기술기반 서비스제공자의 등록부(제23조), 제5절 영업활동의 수행(제24조~제29조), 제6절 토큰발행의 기본정보(제30조~제38조)를, 감독의 장에서는 관할(제39조), 공무상 기밀(제40조), 국내 관청 및 기관과의 협력(제41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전송(제42조), 금융시장감독청(FMA)의 임무 및 권한(제43조), 감독공과금 및 수수료(제44조)를, 절차 및 법적 수단의 장에서는 절차(제45조)와 법적 수단(제46조)을, 처벌규정의 장에서는 경죄 및 위경죄(제47조) 11, 책임(제48조), 제재의 통지 및 유책선고의 구속효(제49조)를 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4편은 경과 및 종결 규정(제50조, 제51조)에 해당한다. 12

- 3) 토큰 및 신뢰기술기반 거래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률안(Gesetzes über Token und VT-Dienstleister, TVTG)에 대한 보고 및 신청서(Bericht und Antrag der Regierung an den Landtag des Fürstentums Liechtenstein Betreffend die Schaffung eines Gesetzes über Token und VT-Dienstleister (Token- und VT-Dienstleister-Gesetz; TVTG) und die Abänderung weiterer Gesetze, 이하 ‘토큰 및 신뢰기술기반 서비스법안(TVTG) 보고서’), 2019, 54호, 10-11면.
- 4) Regierung des Fürstentums Liechtenstein, Start der offiziellen Vernehmlassung über das «Blockchain-Gesetz», 2018, 8, 29.
- 5) 정식명칭 ‘Gesetz über Token und VT-Dienstleister (Token- und VT-Dienstleister-Gesetz; TVTG)’은 ‘토큰 및 신뢰기술 기반 서비스제공자에 관한 법’이라고 번역된다.
- 6) 토큰 및 신뢰기술기반 서비스법(TVTG) 제1조 참조.
- 7) 토큰 및 신뢰기술기반 서비스법안(TVTG) 보고서, 6면, 10면.
- 8) 이 법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금세탁을 방지하며, 산업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되었고, 법률에서는 ‘블록체인’을 명시하지 않고 “신뢰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거래시스템”이라고 정의하여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9) 토큰 및 신뢰기술기반 서비스법(TVTG) 제1조 제2항.
- 10) 리히텐슈타인의 ‘토큰 및 신뢰기술기반 서비스법’의 각 조문을 별도의 표로 정리하였다.
- 11) 독일은 1872년 독일제국의 성립 후 제정된 형법전에서 경죄(Vergehen)와 중죄(Verbrechen)으로 구분되는 범죄들 외에 위경죄(Übertretung)를 형법전에 추가하였고, 1968년 개정을 통해 모든 형법상의 위경죄들은 질서위반법으로 넘겨졌다. Hans-Heiner Kühne, 주요선진국의 형사특별법제 연구: 독일의 부수형법, 형사특별법 정비방안(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12, 10면, 17-18면 참조.
- 1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형섭, 유럽의 블록체인 입법 및 정책 동향 - 독일,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2019, 11, 15.”의 제5장 131면 이하 참조.



III. 결론 및 시사점

리히텐슈타인은 블록체인에 대한 포괄적 규율을 위해 토큰경제와 관련한 신뢰기술과 신뢰기술기반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법제화하여 규제의 틀로 끌어 들였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리히텐슈타인 블록체인법의 규율내용은 우리 법제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법적 개념과 용어의 정의에 있어 기술중립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가상화폐나 암호화폐 등의 용어 대신에 상위개념으로서 권리의 객체로서 '토큰'의 개념을 중심으로 규범을 정립하였다.

둘째, 블록체인기술을 '신뢰기술' 또는 '신뢰기술기반 시스템'이라고 핵심특징만을 남겨 표현함으로써 미래의 기술발전을 염두에 두고 규범화전략을 수립하였다.

셋째, 이 법은 관련 산업의 이해관계자의 활동에 기준을 제공하고 관련 기술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법제화한 것으로 민법상 기초와 신뢰기술기반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감독 및 규율의 두 가지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다.

넷째, 이 법은 민법상 기초로서 리히텐슈타인의 법이 적용가능한 경우 토큰을 국내에 있는 자산(재산)으로 인정함과 아울러 토큰의 처분권을 가진 자는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토큰의 처분은 토큰에 표시된 권리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며, 그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등 토큰을 물권과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다.

리히텐슈타인의 경제발전의 의지와 이를 위한 법제화의 노력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향후 훌륭한 핀테크의 중심지로의 성장 및 금융서비스산업의 새로운 수입원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등 리히텐슈타인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¹³⁾

13) Ralph Wagner, “Braucht Liechtenstein ein Blockchain-Gesetz? Chance für neue Einnahmequelle”, Liechtensteiner Monat, 2019, 3, 4-5면.



QR코드를 스캔하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한 <리히텐슈타인 블록체인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